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52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윤준병·신영대·이원택

이성윤 · 조계원 · 허 영

안도걸 • 민병덕 • 강준현

김태년 • 박민규 • 김우영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 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 ·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 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6조제2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로 한다.

제75조제4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직무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 2. 제66조제2항 또는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 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 제3조(직무유기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6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 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야 한다. <u><신</u>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국 회에서 선출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경 우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② ~ ⑤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히	}
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
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u>-</u>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히	<u>H</u>
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현행고	ŀ
같음)	
②	_
	_
	_
	_
	_
	_
	_
헌법재판소가 결정	<u>}</u>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	1
<u>o</u> }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형	Ŋ
과 같음)	
4	_
	_
	_
	_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

⑤ ~ ⑧ (생 략) <u><신 설></u> 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직무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
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제66조제2항 또는 제75조제4
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